

사단법인 한국우주과학회 정관

1995년 5월 3일 제정
1996년 5월 4일 개정
2014년 10월 29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주과학의 발전과 그 응용 및 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우주과학회(이하 학회)라 칭하고, 영어명칭은 The Korean Space Science Society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한국천문연구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적 회합의 개최
2.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교환
4. 학술의 국제교류
5.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6. 기타 본 학회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학회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우주과학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대학에서 우주과학 또는 그에 관련된 과정을 수학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2.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대학 학부 과정에서 우주과학 또는 그에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한 자
3. 준회원: 준회원은 정회원 중 과거 3년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우주과학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학회의 목적달성에 큰 공적이 있는 자
5.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학회에 찬조 및 기부행위 또는 동등한 기여를 한 개인 또는 단체
6.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단체

제7조 (입회)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 본 학회의 정회원 혹은 학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인의 추천을 얻어 입회를

-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 후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서 추대한다.
 3.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은 이사 2인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의무와 권리)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정관 및 의결사항의 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
2. 회원은 연구발표, 논문 기고 및 학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회원은 학회 운영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권리의 정지)

1.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나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서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학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1인 이상 3인 이내
3. 감사 2인
4. 이사 15인 이상 25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의 절반은 투표로 선출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장이 지명한다.
2. 상기 임원 선출을 위하여 임원선출방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선출된 임원은 감독관청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이사의 직무)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총무, 재무, 학술 이사 등을 둘 수 있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와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와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결과 정족수)

1. 총회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때
 - ② 제15조 제4호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 ③ 국내에 있는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리 또는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정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평의회 (삭제)

제21조 (평의원의 자격 취득과 상실)

삭제

제22조 (평의원의 직무)

삭제

제6장 이사회

제23조 (이사의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원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2.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제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안건으로 채택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 ② 제15조 제4호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7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총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제29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 (세입, 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관청에 제출한다

제31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학회의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2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34조 (정관 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시행 세칙)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2. 학회의 해산
3. 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37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학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성 명	현 직	전화번호	임 기
회장	오 규 동	전남대학교 교수	062-520-6965	94.5-96.5
부회장	정 장 해	충북대학교 교수	0431-61-2313	94.5-96.5
이사	강 영 운	세종대학교 교수	02-460-0234	94.5-96.5
이사	김 천 휘	충북대학교 교수	0431-61-3139	94.5-96.5
이사	김 철 희	전북대학교 교수	0652-70-2807	94.5-96.5
이사	김 호 일	천문대 연구원	042-865-3217	94.5-96.5
이사	민 경 욱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042-869-2525	94.5-96.5
이사	박 경 윤	시스템공학센터 연구원	042-869-1571	94.5-96.5
이사	서 경 원	충북대학교 교수	0431-61-2315	94.5-96.5

이사	이 영 욱	연세대학교 교수	02-361-2689	94.5-96.5
이사	이 용 복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02-580-5456	94.5-96.5
이사	이 우 백	표준연구원 천문대장	042-865-3215	94.5-96.5
이사	조 경 철	한국우주환경 연구소장	02-761-0031	94.5-96.5
이사	천 문 석	연세대학교 교수	02-361-2685	94.5-96.5
이사	최 규 흥	연세대학교 교수	02-361-2686	94.5-96.5
이사	한 원 용	천문대 연구원	042-865-3217	94.5-96.5
감사	나 일 성	연세대학교 교수	02-361-2681	94.5-96.5
감사	이 용 삼	충북대학교 교수	0431-61-2314	94.5-96.5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 1995년 12월 26일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2. 1996년 7월 24일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3. 2014년 12월 0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허가